

[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  
[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11.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11. 9.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웅양면 보건지소 및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면적	예정금액 (추정가액)	비고
취득	건물	웅양면 노현리 일원	건물	335	517,608	웅양면 보건지소
	토지	"	토지	990	60,000	
	건물	북상면 갈계리 일원	건물	335	517,608	북상면 보건지소
	토지	"	토지	990	60,000	

####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

(단위 : m<sup>2</sup>,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예정금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1	건물	웅양면 노현리 일원	335	517,608	2007	웅양보건지소 이전신축	거창군	
2	“	북상면 갈계리 일원	335	517,608	2007	북상보건지소 이전신축	“	
3	토지	웅양면 노현리 일원	990	60,000	2007	웅양보건지소 신축부지	“	
4	“	북상면 갈계리 일원	990	60,000	2007	북상보건지소 신축부지	“	

#### 5. 검토의견

##### ◆ 웅양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웅양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내·외부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진료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은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243m<sup>2</sup> 규모의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지소에서 주차 공간 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적정위치를 선정 335m<sup>2</sup> 정도로 건물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예산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취득 및 처분

- 건물(취득 및 처분) :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 토지 : 취득 1,000m<sup>2</sup>이상 , 처분 2,000m<sup>2</sup>이상

○ 웅양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77백만원 중 이전건축비 477백만원(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은 확보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3296('06.11.02)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되었으며, 군비(부지매입비, 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 100백만원을 '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주차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됨.

## ◆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은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246m<sup>2</sup> 규모의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에서 주차·대기 공간 등을 확보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335m<sup>2</sup> 정도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북상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77백만원 중 이전건축비 477백만원(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은 확보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3296('06.11.02) 지원 대상기관 확정 선정 통보]되었으며,

군비(부지매입비, 냉난방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비) 100백만원을 '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주차·대기 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나,
- 웅양 및 북상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은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통보가 늦어져, 현재 이전 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7년 당초예산(군비 부담)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안 이므로, 향후 신축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보건지소 시설물 현황(現)

구 분	응양면 보건지소	북상면 보건지소	비 고
위 치	응양면 노현리 217-15	북상면 갈계리 1391-3	
부지면적	137m <sup>2</sup>	1,647m <sup>2</sup> (면사무소 공동부지)	
건축면적	81m <sup>2</sup>	82m <sup>2</sup>	
연 면 적	243m <sup>2</sup>	246m <sup>2</sup>	
구 조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규 모	지상 3층	지상 3층	
건립연도	1982년	1982년	
증축연도	1997년	1990년	
현 실태	- 공간협소 - 벽면누수 - 주차공간 부족 등	- 공간협소 - 벽면 균열누수 - 주차·대기 공간 부족	

### ▷ 예정부지(안)

○ 응양면 보건지소

- 농협 뒷편 252-4번지(답) : 공시지가, 18,840원/m<sup>2</sup>(62,280원/평)

○ 북상면 보건지소

- 우체국 옆 1433-4번지(답) : 공시지가, 31,000원/m<sup>2</sup>(102,480원/평)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